

파주시통·리장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이 조례안은 2003년 7월 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003년 7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1. 개정이유

- 아파트 신축으로 행정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리를 아파트 단지로 분리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에 나가고자 신설되는 리에 대한 리장 정원을 증원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문산읍 당동리 리장 정원 “3”을 “4”로 교하읍 목동리 정원 “1”을 “2”로 다율리 정원 “3”을 “4”로하여 정원을 3명 증원(안 제2조)

3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행정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리를 분리 조정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신설되는 리에 대한 리장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임.
- 리 신설지역은 문산읍 당동 주공아파트지역을 당동 4리로, 교하읍 교하 2차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지역을 다율 4리로, 교하읍 교하 2차 현대아파트 지역을 목동 2리로 3개 리를 증설하는 것으로,
- 동 조례안의 (별표 1) 리장 정원에 관한 내용 중 문산읍 당동 리 정원 "3"을 "4"로 교하읍 목동리 정원 "1"을 "2"로 다율리 정원 "3"을 "4"로 조정하는 사항임.
- 동 조례안은 파주시통·리·반설치조례(안) 개정에 의한 리 신설에 따라 리장 정원 증가에 따른 필수적인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장수당 등의 예산확보를 포함한 후속적인 추가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지방자치법

제4조 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⑤통·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통·리를 2개이상의 통·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통·리를 하나의 통·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통·리("행정통·리"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⑥제5항의 행정통·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